



여성단체 “稅制바꿔라” 한목소리

17개단체 연합 “부부간 증여-상속세 폐지”운동 착수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증여, 상속세 과세가 정당한다」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남녀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을 만들어 배우자간 증여세 상속세 폐지운동에 나섰다.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 17개 여성단체는 「남녀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여성단체모임」을 만들고 그 첫활동으로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Y W C A 강당에서 「세제개혁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 모임에는 개별가입한 17개 단체 외에 각각 27개, 25개 여성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협

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이 후원단체로 가입하고 있어 지난 89년 연대하여 가족법개정운동을 벌였던 손여성계가 다시 한번 뭉치는 셈이다.

지난 7일 한국여성정치연맹과 가정법률상담소가 뜻을 같이하는 15개단체를 규

이므로 부부공동의 소유』라고 전제하고 「배우자간 증여세 상속세 과세는 아내가 경제무능력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아내의 몫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증여세 상속세의 세금징수가 어렵고 증여세 폐

20일 토론회... 국회 청원 전국서명 추진

합하면서 결성된 이 모임은 주부들이 가정생활과 경제에 공동으로 참여한 자신의 몫, 즉 주부권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법률상담소 金淑子 부소장은 「부부는 가정생활 및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영위해가며 혼인중에 모든 재산은 상호협력하여 이룩한 것

지시 탈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 「금융실명제 실시로 앞으로는 모든 세원에서부터 세금징수가 쉽고 합리적으로 실행될 것이며 96년경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배우자간 재산이동에 따른 탈세의 우려는 없어지므로 증여세 상속세 폐지는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배우자간의 증여세 폐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해 분할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폐지 등 3개항을 내걸고 국회 청원, 전국단위의 서명운동, 홍보전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熹暎)